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6.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8.28.)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3.)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정애의원)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 육아휴학 신청대상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있음. 또한, 대상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더욱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제23조의4(휴학)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	3. <u>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u>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함. 대응방안에는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만8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도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학생들이 출산·육아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휴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합계출산율이 '24년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유사법안으로는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있음. 두 법안은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는 것은 동일하나, 본 개정안은 대상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그 소급적용 규정의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바,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동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기존 육아휴학 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하였거나, 일반휴학 중인 학생들도 이를 육아휴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 이는 일반휴학들이 대부분 총 휴학연

1) 의안번호 제2200810호,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이 존재하고, 육아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로 산정됨을 고려할 때,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휴학을 더 길게 할 수 있게 하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부칙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학적 수정으로 인한 학사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²⁾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가정의 양립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특히 30대 이상인 대학 재학생,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육아와 학업(고등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법 개정 이후 휴학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제1조(시행일)를 즉시 시행으로 수정할 것과,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는 법 개정 전에 이미 휴학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과거 학적 수정으로 인한 학사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21대 국회 때 발의된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가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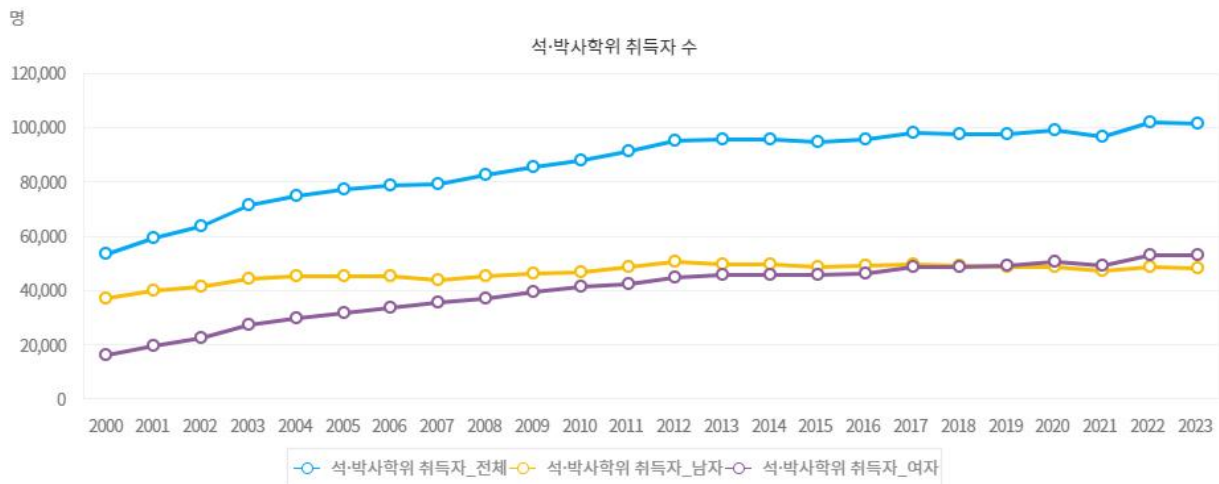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재학생 연령별 학생 수 현황

출처 : 고등교육통계(KEDI)

	2023	2022	2021	2020	2019
20세	212,332	233,785	266,577	260,467	254,818
21세	266,215	278,989	272,488	260,669	264,966
22세	259,045	247,927	248,416	248,634	248,360
23세	200,711	207,569	212,418	209,260	215,115
24세	132,682	142,846	144,991	147,796	147,701
25세	86,543	90,915	94,920	91,731	89,403
26세	58,584	62,420	62,305	58,104	58,197
27세	44,409	45,085	43,584	41,341	40,778
28세	34,642	34,426	33,703	31,233	28,513
29세	27,744	28,187	27,022	23,259	22,849
30세	24,000	24,042	21,297	19,424	19,070
31세	20,890	19,254	18,216	16,847	16,169
32세	16,885	16,573	15,996	14,455	14,341
33세	14,910	14,937	14,191	13,145	13,153
34세	13,292	13,228	12,990	12,291	12,124
35세	12,277	12,547	12,351	11,635	12,840
36세	11,639	12,090	11,854	12,497	13,559
37세	11,521	11,576	12,785	13,145	13,801
38세	11,153	12,654	13,623	13,616	13,583
39세	12,330	13,607	13,907	13,189	13,313
40세	13,376	13,799	13,432	13,171	11,691
41세	13,400	13,203	13,589	11,602	11,866
42세	13,067	13,509	11,811	11,863	11,586

-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 추세

출처 : 고등교육통계(KEDI)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정을호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고민정 의원, 김기현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